

심사보고서

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0
----------	----

2018. 12. 14.(금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8년 11월 21일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2월 04일

-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공병영 충북도립대학 총장)

가. 제안사유

- 고등교육법 개정(2011. 7월)에 따라 전문대학도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 사용 가능
- 전국7개 도립대학 중 전남도립대학을 시작으로 강원도립대학까지 4개 도립대학이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교로 교명변경 추진
- 전국 도립대학의 추세를 반영하여 교명변경을 통한 대학의 위상과 이미지 쇄신 필요
- 그간 추진사항
 - 의견수렴(직원, 학과, 총학생회, 평의원회, 교무위원회) : 2018. 8.22.

- 도지사 승인 : 2018. 8.23.
- 제367회 도의회 사전동의안 의결 : 2018. 9.19.
- 교육부 교명변경 인가 신청 : 2018. 9.28.
- 교육부 교명변경 최종 인가 : 2018.10.22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제명 및 조문의 교명 변경

- (현재) 충북도립대학 (변경) 충북도립대학교

3. 검토보고 요지 (최영지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「고등교육법」 개정 에 따라, 전문대학도 대학교라는 명칭사용이 가능하게 된 바, 기존 ‘충북도립대학’ 을 ‘충북도립대학교’ 로 변경하여 학교의 위상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.

□ 고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대학
2. 산업대학
3. 교육대학
4. 전문대학
5.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(이하 “원격대학“이라 한다)
6. 기술대학
7. 각종학교

제18조(학교의 명칭) ①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,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을 정할 때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1. 7. 21.]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조례 제명과 안 제1, 2조에서는 「고등교육법」 제8조에 따라 ‘충북도립대학’ 을 ‘충북도립대학교’ 로 변경하였고,

- 안 제1조에서는, 목적 규정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법령입안·심사기준(법제처)에 따라 약칭규정을 삭제하였으며,
- 안 제2조에 “충북도립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“는 약칭 규정을 포함하였음.
- 안 제4조제3항은 안 제2조의 약칭규정에 따라 “충북도립대학”을 “대학”으로 변경하였고,
- 부칙 제2조에서는 학교 명칭 변경(‘충북도립대’ → ‘충북도립대학교’)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 -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 → 제명, 제1조, 제2조제2항
 -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→ 제15조제1항
 -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→ 별표
 -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→ 제4조제2항제2호가목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되었고, 전국 7개 도립대학 중 이미 4개 도립대학((강원, 충남, 전남, 경북)이 교명을 대학교로 변경한 바, 충북도립대의 교명 변경은 시기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고등교육법」 제8조에 따라 기존 학교 명칭인 ‘충북도립대학’을 ‘충북도립대학교’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

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0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8년 11월 21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고등교육법 개정(2011. 7월)에 따라 전문대학도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 사용 가능
- 전국7개 도립대학 중 전남도립대학을 시작으로 강원도립대학까지 4개 도립대학이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교로 교명변경 추진
- 전국 도립대학의 추세를 반영하여 교명변경을 통한 대학의 위상과 이미지 쇄신 필요
- 그간 추진사항
 - 의견수렴(직원, 학과, 총학생회, 평의원회, 교무위원회) : 2018. 8.22.
 - 도지사 승인 : 2018. 8.23.
 - 제367회 도의회 사전동의안 의결 : 2018. 9.19.
 - 교육부 교명변경 인가 신청 : 2018. 9.28.
 - 교육부 교명변경 최종 인가 : 2018.10.22.

2. 주요내용

- 조례제명 및 조문의 교명 변경
 - (현재) 충북도립대학 (변경) 충북도립대학교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충북도립대학(이하 “대학“이라 한다)”을 “충북도립대학교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대학은”을 “충북도립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는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충북도립대학”을 “대학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”를 “충북도립대학교발전재단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및 제2조제2항 중 “충북도립대학”을 각각 “충북도립대학교”로 한다.

②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 제1절 제목 및 제15조제1항 중 “충북도립대학”을 각각 “충북도립대학교”로 한다.

③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일반행정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명 칭	소 관 부 서	
	주관실국	부 서
일반행정 분 과	기획관리실 (정책기획관)	의회사무처, 공보관, 감사관, 기획관리실, 행정국, 충북도립대학교, 자치연수원, 서울세종본부, 북부출장소, 남부출장소

④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충북도립대학”을 “충북도립대학교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(제명) <u>충북도립대학</u> 운영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충북도립대학</u>(이하 “대학”이라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운영) <u>대학</u>은 교육기본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47조에 의한 대학의 이념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구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당연직위원은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, 옥천군수 및 <u>충북도립대학</u> 소속 교직원 ----- -----.</p>	<p>(제명) <u>충북도립대학교</u> 운영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충북도립대학교</u>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운영) <u>충북도립대학교</u>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는 교육기본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47조에 의한 대학의 이념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구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당연직위원은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, 옥천군수 및 <u>대학</u> 소속 교직원 ----- -----.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고등교육법

제4조(학교의 설립 등)

-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·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-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18조(학교의 명칭)

- ①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,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을 정할 때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.

□ 고등교육법 시행령

제2조(학교설립 등)

- ① 「고등교육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·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②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

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목적 2. 명칭 3. 위치 4. 학칙 5. 학교현장 6.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.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. 교사의 평면도 9. 개교예정일 10. 부설 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.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

⑤ 법 제4조 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"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·경영자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.

⑥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변경사유 2. 변경내용 3. 변경연월일

⑦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학교의 폐지: 60일

2. 학교의 위치 변경: 60일

3. 학교의 설립·경영자 변경: 30일

4. 학교의 설립목적, 명칭 또는 부설학교의 설립계획서 변경: 30일

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가 설립·운영하는 도립대학의 인지도 및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명을 변경하고자 함
- 교명변경 : (현재) 충북도립대학 (변경)충북도립대학교

2. 비용 발생 요인

- 교명변경에 따른 공인신조, 사업자 등록변경, 교기제작 및 외부시설 및 학내 표지판 등 변경 필요

3. 관련조문 : 해당없음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공인신조, 사업자 등록 변경, 교기제작 및 외부시설 및 학내 표지판 변경에 필요한 금액

나. 추계 결과

- 공인신조, 사업자 등록변경, 교기제작 : 2,550천원
- 외부시설 및 학내 표지판 변경 : 245,0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지원금(41%), 대학자체수입금(59%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충북도립대학 교학처장 김 평 중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계
세 입						
세 출	247,550	-	-	-	-	247,550
공인신조,	1,100	-	-	-	-	1,100
사업자등록 변경	450	-	-	-	-	450
교기제작	1,000	-	-	-	-	1,000
정문교체공사	100,000					100,000
옥상간판교체	90,000	-	-	-	-	90,000
학내표지판 및 홍포판	40,000					40,000
표지석교체	15,000	-	-	-	-	15,000
재원 조달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
	지방세(도비)	102,550				112,55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						
구·군비						
대학자체수입금	145,000					145,000

[세부 산출기초]

구 분	금액 (천원)	산출근거	비고
합 계	247,550		
공인신조	1,100	22개 × 50,000 (사무국 14개, 산학협력단 8개)	도비
사업자 등록 등기 변경	450	3건 × 150천원(대학, 산학협력단, 발전재단)	도비
교기제작	1,000	5개× 200천원	도비
정문교체공사	100,000	노후정문 철거 및 재설치 70,000천원 주변조경 및 환경개선 30,000천원	도비
옥상간판교체	90,000	옥상 및 벽면이용 LED간판 7개(70,000천원) UI간판 2개 (10,000천원) 도로이정표공사 1식 (10,000천원)	자체수입금
학내 표지판 및 홍보판	40,000	주출입구 현황판 10개×500천원=5,000천원 실내 표지판 300개×50천원=15,000천원 실내 홍보판 200개×50천원=10,000천원 외부 홍보판 100개×100천원=10,000천원	자체수입금
표지석교체	15,000	입구 교명표지석 교체 1식	자체수입금